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업무 방해·공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 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도로 교 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



단·흉기등 감금)·협박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전문】

【피고인】

【검사】최임열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조준연 외 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10월, 피고인 5(제2심판결의 피고인 4)를 징역 10월, 피고인 6(제2심판결의 피고인 5)을 2009고합613호 판시 제5, 1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0고합306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7(제2심판결의 피고인 6)을 징역 10월, 피고인 8을 징역 1년, 피고인 9(제2심판결의 피고인 7)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10(제2심판결의 피고인 8)을 징역 6월, 피고인 11(제2심판결의 피고인 9)을 징역 8월, 피고인 1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10)를 징역 2년, 피고인 1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11)을 2010고합60호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0고합270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1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5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인 12)를 징역 8월, 피고인 16(제2심판결의 피고인 14)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4, 6, 7, 8, 10, 11, 16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4, 6, 7, 8, 10, 11, 16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5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각 공갈의 점, 피고인 6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 1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피고인 7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 피고인 13에 대한 2010. 1.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협박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5(제2심판결의 피고인 13)는 무죄.

[이유]

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